

(붙임)

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요

□ 현행 국가유산 규제 제도 일원화

현행				
매장유산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	①매장유산 지표조사 : 일정규모의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유산의 매장·분포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 실시(매장유산조사기관) 【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】 제6조(매장문화재 지표조사) 제7조(지표조사 절차 등) 제9조(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의 지시 등) 제10조(보존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)			
	②매장유산 유존지역 협의 : 매장유산 유존지 역에서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보존조치 협의(관계전문가 2인 이상) 【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】 제8조(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)			
문화유산 역사문화 환경보호 문화재 보호법	③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절차 이행(관계전문가 3인 이상) 【문화재보호법】 제13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			
민원인	문화재청 (발굴제도과)	민원인	문화재청 (각 사업부서)	민원인
매장·분포 문화재 지표 조사, 보고서 작성 후 협의요청	보고서 검토, 보존조치 통보 (최소10일)	건축행위 현상변경 허가신청 (지자체 경우 1~2일)	영향검토 (전문가 현지조사, 위원회 심의 등) 행위허가(최소30일)	사업시행

개선		
매장유산 및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호 국가유산 영향진단법	①영향진단 : 매장유산 지표조사·유존지역 협의와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영향진단으로 통합, 동시 실시(매장유산조사기관) i. 지표조사 ii. 매장유산 유존지역 협의 iii. 지표조사 +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iv. 매장유산 유존지역 협의 + 문화유산 보존영향 검토 ②약식영향진단 : 지표조사 대상 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아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실 시하는 건설공사는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만 실 시(관계전문가 3인 이상) 사전영향 협의(신설규정) : 대규모 행정계획 등 수립 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규정 사항을 문화재영향진단법에 규정, 사전협의 절차 누락 예방	
민원인	문화재청(전담부서)	민원인
영향진단 보고서 제출 (지표조사 및 영향검토 보고서) (지자체 경우 1~2일)	보고서 검토, 영향無→허가의제처리(최소10일) (단, 영향有→위원회 심의절차 이행)	사업시행

□ 제정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, 영향진단, 약식영향진단 비교

구분	대상사업자 (시기)	협의(진단) 대상 및 방법	작성주체	검토주체
사전영향협의	중앙부처, 지자체 공공기관 등 (개발계획 수립 전)	매장유산 지표조사 대상,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	중앙부처, 지자체 등	문화재청
영향진단	지자체, 공공기관, 일반기업, 사업자 등 (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)	3만제곱미터 이상 규모 공사 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※ 지표조사, 유존지역 협의, 영향검토 동시 실시	진단기관 의뢰 (시군구와 문화재청 동시 제출)	문화재청 (영향有→ 허가절차 이행)
약식영향진단	일반국민 대다수 (인·허가전)	매장유산이 없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※ 영향검토만 실시	지자체장 (필요시 진단기관 의뢰)	지자체장 (영향有→ 문화재청 허가절차 이행)